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 
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 
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5월 12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5/02  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86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동의 사무소”를 “동주민센터”로 하고 “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”를 “별표2와 같다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, 사후 관리를 한다.

[별표2]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2]

##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, 관할구역(제13조 제2항 관련)

동주민센터 명칭	동 주민 센터 소재지		법 정 동 관 할	
	도로명주소	지 번	전자역관할	일부지역관할
노량진 제1동	동작구 <a href="#">장승배기로28길 30</a>	동작구 노량진동84-100	본 동	노량진동중 13-8을 기점으로 14-37을 경유, 60-15에서 장승배길을 따라 231-112, 232-33, 225-232, 225-281, 225-238, 325-2, 327에 이르는 지역
노량진 제2동	동작구 <a href="#">장승배기로19길 48</a>	동작구 노량진동 302-97(302-411)		노량진동중 노량진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
상도 제1동	동작구 <a href="#">상도로53길 9</a>	동작구 상도동437	상도1동	상도동중 1-38을 기점으로159-102, 산64, 산57, 산49 일대를 경유하여 산39-15에 이르는 지역
상도 제2동	동작구 <a href="#">상도로 211</a>	동작구 상도동 25-48		상도동중 산7-3을 기점으로 356-32, 361-56, 366-20, 186-5, 204-334를 경유 산65-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
상도 제3동	동작구 <a href="#">상대로2길 11</a>	동작구 상도동 315-37		상도동중 343-1을 기점으로 상도동길을 따라 187-1, 356-156, 356-224, 356-221을 경유 대방동, 신대방동, 관악구 경계를 따라 산 75-3에서 259-35, 324-1에 이르는 지역
상도 제4동	동작구 <a href="#">상대로29길 53</a>	동작구 상도동 188-81		상도동중 상도제1,2,3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
흑석동	동작구 <a href="#">흑석한강로 11</a>	동작구 <a href="#">흑석동 335-2</a>	흑석동	
사당 제1동	동작구 <a href="#">동작대로17길 28</a>	동작구 <a href="#">사당동 1004-52</a>		사당동중 147-3을 기점으로 사당로를 따라 321-114에서 319-44, 316-230, 303-30, 303-61, 303-111에 이르는 소도로를 경계로 한 동남지역
사당 제2동	동작구 <a href="#">동작대로29길 52</a>	동작구 사당동 1136-1	동작동	사당동중 산1-1을 기점으로 동작대로자나 147-113에서 사당로를 따라 150-3, 140-168, 105를 경유 105-29에 이르는 지역
사당 제3동	동작구 <a href="#">사당로17길 86</a>	동작구 사당동 169-12		사당동중 산 31-1을 기점으로 150-10에 이르는 사당로 이북지역으로서 사당제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
사당 제4동	동작구 <a href="#">사당로16아길 6</a>	동작구 사당동 300-8		사당동중 사당로 아남지역으로 250-6을 기점으로 272-35,를 지나 278-99, 산44-7, 288-34, 300-54(공원), 산45-14, 산45-6을 경유 사당1동 경계를 따라서 321-1에 이르는 지역
사당 제5동	동작구 <a href="#">사당로2가길 219</a>	동작구 사당동 228-11		사당동중 사당 제1, 2, 3, 4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
대방동	동작구 <a href="#">연안대방로44길 20</a>	동작구 대방동 501-2(350-8,350-9)	대방동	
신대방 제1동	동작구 <a href="#">신대방길 72</a>	동작구 신대방동 604-8		신대방동 중 640을 기점으로 698,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따라 710 아남지역과, 492-200에서 산144-3을 지나 도림천에 이르는 이북지역
신대방 제2동	동작구 <a href="#">연안대방로24길 106</a>	동작구 신대방동 355-9		신대방동 중 신대방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

### □ 개정이유

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,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“동주민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 구역”조항을 편입 (제13조 제2항)

- 1) ‘동의 사무소’를 ‘동주민센터’로 변경하고,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‘따로 조례로 정하였던 것’을 ‘별표2와 같다’로 하여 조례에 편입함.

나. 동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(제14조 제2항)

- 1) ‘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, 사후 관리를 한다’를 신설함.

다.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(新) 도로명주소로 변경 (별표2)

- 1)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구(舊)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었으나, 변경된 신(新) 도로명 주소를 반영함.

라.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는 폐지(부칙 제2조)

- 1)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 조례,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”는 폐지함.